

# **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**

## **1. 심사경과**

**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** 2003년 8월 22일 부천시장 제출

**나. 회부일자 :** 2003년 8월 22일

**다. 상정 및 의결일자**

○ 제106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2003. 8. 29) 상정

○ 제106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2003. 8. 29) 의결

## **2. 제안설명 요지**

**(제안설명자 : 기업지원과장 배덕기)**

### **가. 제안이유**

○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를 확대 구성하여 효율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기구로 운영하며

○ 폭넓은 소비분야 대표와 전문가의 자문으로 국내·외 지역경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.

### **나. 주요골자**

○ 위원회 구성인원을 13인 이내에서 29인 이내로 하고, 위원의 위촉 기준을 소비자 등으로 확대함.

(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)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위원수를 늘리려는 사유?</li><li>○ 13명에서 29명으로 늘리는 사유?</li><li>○ 위원회 개최실적?</li><li>○ 위원수가 많으면 효율성이 감소 할 우려가 있음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경제위기 이후 여건변화로 소비 계층에 대한 참여 확대</li><li>○ 기업인, 여성, 단체 대표 등의 참여을 확대</li><li>○ 1999년 이후 11회 개최함</li><li>○ 다양한 인사의 참여를 시키기 위함</li></ul>

### 4. 토론요지

#### 가. 찬성토론

- 없음

#### 나. 반대토론

-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15인 이내로 위원회 구성
- 각계의 참여를 고려하여 19인 이내로 구성함이 타당함

### 5. 심사결과

- 수정의결

### 6. 소수의견

-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하여 위원수를 개정안과 같이 늘리는 것도 바람직할 수는 있음

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#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 번 호	관련 제167호
의 결 년 월 일	2003. 9. 3. (제 106회)

제출년월일 : 2003. 9월 1일

제 안 자 : 기획재정위원장

## □ 수정이유

- 위원회의 위원수를 13명에서 29명으로(2배이상) 확대하는 것 보다는 적정한 위원수를 위촉하여 위원회를 운영함이 효율적이라고 보며,
- 특히, 비전문가 등 다수의 위원 위촉으로 인하여 위원회 운영시 불참, 회의 지연 등 자칫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하는 우려가 있어 위원수의 무리한 확대보다는 적정인원으로 확대하여 운영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.

## □ 주요골자

- 위원회 구성에 있어 29인 이내로 하는 것을 19인 이내로 조정 (안 제3조)

## **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**

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 
수정한다.

안 제3조제1항 “29인이내의”를 “19인이내의”로 한다.

## 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(구성) ① 위 원 회 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<u>13인</u> <u>이내의</u>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(생 략) ③ 위원은 기업경영컨설턴트, 회계사, 변호사, <u>기업인 등</u> 경제와 관련한 전문가중 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p>④ (생 략)</p>	<p>제3조(구성) ①..... .....<u>29인</u> ..... ② (현행과 같음) ③..... .....<u>기업인, 소비자 등</u> ..... ..... ④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3조(구성) ①..... .....<u>19인</u> ..... ② (개정안과 같음) ③ (개정안과 같음) ..... ④ (개정안과 같음)</p>

[수정안 포함]

##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중 “13인이내의”를 “19인이내의”로 하고, 동조제3항중 “기업인등”을 “기업인, 소비자등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<u>13인이내의</u>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은 기업경영컨설턴트, 회계사, 변호사, <u>기업인</u> 등 경제와 관련한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3조(구성) ①----- -----<u>19인이내의</u>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----- -----<u>기업인, 소비자</u> 등 ----- -----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